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

1. 관련 근거
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0.12.27.)

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4620(2020.12.28.)

2.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12.27.)를 통해 **수도권 거리두기 2.5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('20.12.24.~'21.1.3.)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** 이에 추가적으로 **패스트푸드점에 대하여도 방역 수칙을 보완하여 불임1과 같이 송부해 와** 안내드립니다.

*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,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을 조정 가능. (현재의 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 조치 완화는 가급적 지양)

**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'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' 참고.

3.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[중수본공문]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

2.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 끝.

교육부장



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 **김신혜** 학생건강정책과장 전결 2020.12.28. 조명연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11156 ((2020.12.28.)) 접수 (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14동 교육부 (어진 / www.moe.go.kr
동)

전화 044-203-6814 전송 044-203-6438 / shin8352@korea.kr / 비공개